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3-655-9826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민영		비규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거주자	없음		
전매제한	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12.11.(수)	2024.12.16.(월)	2024.12.17.(화)	2024.12.20.(금)	2024.12.23.(월)~ 2024.12.24.(화)	2025.01.02.(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u>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u>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 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각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일반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m²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취소주택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O			X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동일 주택형 내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단, 금회 일반공급 배정세대수가 없는 주택형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지 않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lottecastle.co.kr/APT/AT00367/main/index.do)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 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지 유의사항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2.11.(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4930073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7.23.(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528**이므로,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12.16.(월)	2024.12.17.(화)	2024.12.20.(금)	2024.12.23.(월)~2024.12.24.(화)	2025.01.02.(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 ■ 현장접수 불가	:30)	■ (PC·모바일) 청약홈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10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 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1.08.10.)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Qui	! -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택과 - 제33664호(2024.12.1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교동 1018-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9층 11개동 총 1,305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3세대[특별공급 2세대(신혼부부 1세대, 생애최초 1세대) 포함]

■ **입주시기** :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T F!!	T 511+1			2	주택공급면적	4	그 밖의	공용면적	711.01	III ell ser	+	특별	별공급 세다	l수	014177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안신#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신혼부부	생애최초	계	일반공급 세대수
	01	084.9242A	84A	84.9242	27.7942	112.7184	4.2553	53.0941	170.0678	45.7243	2	1	1	2	-
2024930073	02	114.9485B	114B	114.9485	37.1366	152.0851	5.7597	71.8651	229.7099	61.8898	1	-	-	-	1
	합 계										3	1	1	2	1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0.3025 또는 공급면적(m²)÷3.3058

※ 면적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넷째자리로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114B	합 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1	-	1
생애최초 특별공급	1	-	1
합 계	2	-	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단위 : 층, 세대, 원)

주택형	약식	동별	동별 층 구분 라인별 층 구분		ᄎᄀᆸ	ᄎᄀᆸ	ᄎᄀᆸ	ᄎᄀᆸ	ᄎᄀᆸ	ᄎᄀᆸ	세대수		공급	금액		계약금(10%)	잔금(90%)
구택성	표기	라인별	ᅙᅚᇎ	게네ㅜ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입주지정일							
084.9242A	84A	101동 2203호	22	1	91,160,000	338,840,000	-	430,000,000	43,000,000	387,000,000							
U04.9242A	04A	107동 1103호	11	1	88,404,000	328,596,000	-	417,000,000	41,700,000	375,300,000							
114.9485B	114B	103동 2203호	22	1	121,264,000	409,780,800	40,955,200	572,000,000	57,200,000	514,800,000							

※ 상기 공급금액에는 세대별 인지대,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약금, 잔금에 대하여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잔금 납부 마감일인 이후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연체료 부과 및 해지 요건에 따릅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기타 유상옵션) 및 발코니 확장비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기타 유상옵션) 및 발코니 확장은 최초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한 사항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 ※ 잔금 납부와 관련하여 대출금융기관 알선 등은 없으며, 계약자는 이를 인지하고 지정한 일자에 잔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및 납부일정

- ※ 본 아파트는 계약 취소된 주택을 기존계약 내용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이미 시공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 대해 변경, 추가, 취소 등을 요구하실 수 없으니 이점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Ę	호수	금액	계약금(10%)	잔금(90%)
T 7 8	작작표기 	_ _	<u> </u>	<u> </u>	계약시	입주지정일
084.9242A 84A	0.4.6	101	2203	18,100,000	1,810,000	16,290,000
	04A	107	1103	18,100,000	1,810,000	16,290,000
114.9485B	114B	103	2203	17,600,000	1,760,000	15,840,000

- 추가선택품목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동	호수	구분	품목	금액	계약금(10%)	잔금(90%)	
て刊る	각역표기	-	포ㅜ	T 正	품국	<u> </u>	계약시	입주지정일	
				복도	거실/복도마감_타일, 시트판넬	1,770,000			
				등기구	거실간접조명우물천정	520,000			
				주방	하이브리드 쿡탑(쿠첸)	210,000			
				주방	빌트인 김치냉장고(가구포함)	1,400,000			
		101	2203	주방	상판, 벽체마감_엔지니어스톤	2,560,000	1 620 000	14 500 000	
		101	2203	등기구	주방디자인우물천정	540,000	1,620,000	14,580,000	
			붙박이가구	침실2 붙박이장	610,000				
				현관	3연동중문	1,180,000			
00400404	0.44				시스템에어컨	선택2_5대_전실	7,410,000		
084.9242A	84A			계		16,200,000			
				주방	상판, 벽체마감_엔지니어스톤	2,560,000			
				시스템에어컨	선택2_5대_전실	7,410,000			
				바닥옵션	거실+주방+복도	1,930,000			
		107	1100	붙박이가구	침실2 붙박이장	610,000	1 524 000	12,000,000	
		107	1103	등기구	주방디자인우문천정	540,000	1,534,000	13,806,000	
				등기구	거실간접조명우물천정	520,000			
				복도	거실/복도마감_타일, 시트판넬	1,770,000			
					계	15,340,000			

				нг		460,000						
				복도	복도수납장	460,000						
				복도	거실/복도마감_타일, 시트판넬	2,560,000						
				주방	빌트인 김치냉장고(가구포함)_삼성	1,400,000						
				주방	상판, 벽체마감_엔지니어스톤	2,330,000						
								주방	빌트인 식기세척기	790,000		
114.9485B	114B	103	2203	현관	3연동중문	1,180,000	1,993,000	17,937,000				
				시스템에어컨	선택2_6대_전실	9,120,000						
				붙박이가구	침실2 붙박이장	870,000						
				등기구	주방디자인우물천정	560,000						
				등기구	거실간접조명우물천정	660,000						
				<u>.</u>	계	19,930,000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 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 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 체결일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재금액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구분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공급기준	당첨자빌	날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 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 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OUMEREN EC 17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대 무주택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	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공통 유의사항" p.1~2 참조)								
요건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	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4-1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7.01. ~ 12.3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구분	비율	소득금액					
TE	미끌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 시가표준		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 [.]	정한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HEAL			~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부동산 (건물+토지)			T = 1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じョ・エハ)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단, 아래	경우는 제외	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힌 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0/18] M2XM1XM 4C 8MXM EL	- 6 44724 44 62 4 1 6 64 69 6496 64464 61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2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단독세대'와 '단독세대'와 '단독세대'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본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10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7.01. ~ 12.3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비율	소득금액					
비결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경 시가표준액 적용																
			기ᄎᄆ	기 ★ ㅁ	71 *	71 *	71 *	71 * 12	기ᄎᄆ	기 ★ ㅁ	기초묘	기ᄎᄆ	기ᄎᄆ	기ᄎᄆ	기 ᄎ ㅁ	기 ᄎ ㅁ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부동산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건물+토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토지		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 경우는 제외	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	금액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거주 하는 무주택세대주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취소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12.20.(금) ~ 2024.12.29.(일)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2024.12.20.(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서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구비서류 발급 ² (해당자)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본인	• 계약체결 장소 비치	
	0		계약금 입금내역	본인	• 아파트 및 발코니 확장,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을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내역	
공통서류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0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본입발급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 불가	

	0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으로 대체
					• 발급형태 : 전체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세대 구성 정보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본인 및 세대원 전체 표기 등)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발급형태 : 전체 ※ 세대 구성 정보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본인 및 세대원 전체 표기 등)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제출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공개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 표기
	0		전자수입인지	본인	• 인지세 납부 후 전자수입인지 지참
		0	자격검증서류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0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별도 안내예정)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7년 이내의 혼인기간 또는 혼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7년 이내의 혼인기간 또는 혼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0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상세)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건강(의료)보험증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상세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
1232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계약체결 장소 비치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계약체결 장소 비치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0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상세)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세대원	※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건강(의료)보험증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상세발급)
	0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표2] 참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당첨자의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임신증명서류 또는 본인 또는 생인 등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체결 장소 비치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계약체결 장소 비치
제3자		0	위임장	-	• 계약체결 장소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 또는 서명
대리인 계약 시		0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추가제출)		0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발급용/대리인 발급용 불가)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0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표1]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발급처
근로지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전년도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직인날인, '매월 신고납부대상자확인' 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 전, 후의 급여신청서(확인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①, ② 해당 직장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상기 방식 역시 불가하다면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추정)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①, ② 해당 직장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② 해당 직장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② 세무서
자영업자	신규사업자 등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세무서/등기소 ②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③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상기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 필수 제출	① 해당 직장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사무실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 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필수 제출	① 사무실
(근로자 중	기타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에 한함)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관할구 고용센터 ② 해당직장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해당자격	증빙 제출 서류	발급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① 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 직장 ③ 해당 직장/세무서

-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산정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

■ [표3]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입증서류

해당자격	증빙 제출 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부동산 소유자	① 해당 부동산 건물,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② 재산세 납부내역 ③ 해당 보유 부동산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 ※ 토지/주택 공시지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 홈텍스 / 시가표준액 : 위텍스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정부24 ② 위텍스 ③ 해당 사이트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서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본인	• 계약체결 장소 비치
	0		계약금 입금내역	본인	• 아파트 및 발코니 확장,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을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내역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공통서류	0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본입발급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 불가
	0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으로 대체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발급형태 : 전체

					※ 세대 구성 정보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본인 및 세대원 전체 표기 등)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발급형태 : 전체 ※ 세대 구성 정보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본인 및 세대원 전체 표기 등)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제출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공개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 표기
	0		전자수입인지	본인	• 인지세 납부 후 전자수입인지 지참
		0	자격검증서류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0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별도 안내예정)
제3자		0	위임장	-	• 계약체결 장소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 또는 서명
대리인 계약 시		0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추가제출)		0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발급용/대리인 발급용 불가)

- ※ 상기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구비서류가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하며, 당첨자의 적격 검증을 위하여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됩니다.
- ※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계약체결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주택공급 신청자에게 귀속됩니다.
- ※ 계약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인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특별공급,	■ 일시 : 2024.12.20.(금) ■ 확인방법 하구보도사의 첫양님omo (www.applybomo.co.kr)	■ 일시 : 2024.12.23.(월) ~ 2024.12.24.(화)	■ 일시 : 2025.01.02.(목)
일반공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www.applyhome.co.kr)</u>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원대로 76, 롯터	네캐슬 시그니처 107동 커뮤니티센터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

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당첨자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 관련 안내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500%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계약체결 : 정당계약자의 자격 검증 후 별도 안내 예정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상기 "구비서류" 참조

■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번호	예금주명
아파트 분양대금	BNK 경남은행	207-0128-4732-00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발코니확장	국민은행	465101-01-290514	롯데건설(주)
추가선택품목	う 그런근경 	465101-01-292170	大네션걸(十)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가 상이하오니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101동 1201호 홍길동 → '1011201홍길동'으로 입금)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잔금의 납부기일과 납부금액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지정일자에 상기 계좌로 잔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기준일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보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난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파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가 사용송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명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알 원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시자로 통보반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품공회에 따른 부적시자로 통보반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품공회에 따른 보적시자로 통보반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가입하는 경우 등 관련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 1에 기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지원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의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밝아 사람이 살지 아니라는 폐가에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검투 제1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반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열실시키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하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계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이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업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숙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 공명하여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숙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양한 및 제28조제19항제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다,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전반원수도관은 3억원)을 조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제1호자(보안된 것은 자리의 명원이 85제공리터를 조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적으로서 보증되어 등에 조계적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오에서 같다 안된 기관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점험 시행을 제2조 각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원 시험을 제2조 각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원 시험을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구역을 함께 보다 인상으로 가격을 보다 이 경우 전략으로 가격을 당한다. 이라 이 보다 안된 기관으로 기관으로 가격을 당한다. 이라 이 함께 보다 인상으로 가격을 받았다. 이라 이라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07.23.]를 준용하오니 해당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본 계약취소주택은 견본주택 폐관 후 공급하는 주택이므로 별도의 견본주택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이 완료되었습니다.
- 본 주택은 동별 사용검사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37조, 38조, 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되며,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 ①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신탁법」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교동파크홀딩스, 시행수탁자 ㈜하나자산신탁 및 시공사 롯데건설 ㈜,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②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교동파크홀딩스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③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 겸 수익자인 ㈜교동파크홀딩스와 수탁자 ㈜하나자산 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교동파크홀딩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교동파크홀딩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④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교동파크홀딩스와 시공 사인 롯데건설㈜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⑤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⑥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⑦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 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9의2)

구분	높이
지하 2층	2.3M
지하 3층	2.7M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통신 감리
상 호	㈜진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천도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건일종합기술
감리금액	5,527,525,070	961,738,500	762,300,000

■ 사업주체 현황

구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호	㈜하나자산신탁	㈜교동파크홀딩스	롯데건설㈜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교동 1030번지, 2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잠원동)
법인등록번호	110111-1714818	141111-0063178	110111-0014764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lottecastle.co.kr/APT/AT00367/main/index.do

■ 분양문의: 033-655-9826

|■ 분양사무소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원대로 76, 롯데캐슬 시그니처 107동 커뮤니티센터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위탁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본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에 우선합니다.)